

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· 징수 공고

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제10566호)」제47조제2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, 제3항에 의거하여 ‘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· 징수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0. 8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
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요

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이하 “의료중재원”이라 한다)의 조정 성립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

의료사고 피해자의
신속한 구제 도모



보건의료기관의
재정적 부담 경감 및
보건의료인의 안정적
진료환경 조성

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및 납부 대상자

- 적립 목표액 : 120,961천원
 - 납부 대상자 : '17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,979명
- ※ 단, '18. 1. 1.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

2018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

■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● 상급종합 : 6,336,700원 | ● 종합병원 : 1,069,260원 | ● 병 원 : 111,030원 |
| ● 의 원 : 39,650원 | ● 치과병원 : 111,030원 | ● 치과의원 : 39,650원 |
| ● 한방병원 : 74,020원 | ● 한 의 원 : 26,430원 | ● 요양병원 : 72,170원 |
| ● 보건의료원 : 111,030원 | | |

■ 최저 부담액(1만원) : 약국, 조산원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

※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

2018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

부과 방법

■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

- '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,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등 공고

■ 대불비용 개별 부담액 안내

-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, 납부시기 등에 관한 개별 안내문 발송
-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납부 방법 및 시기

■ 요양급여비용 공제 : '18. 11. 8. ~ '18. 12. 31.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(법 제47조제4항)

■ 가상계좌 납부 : '18. 11. 8. ~ '18. 12.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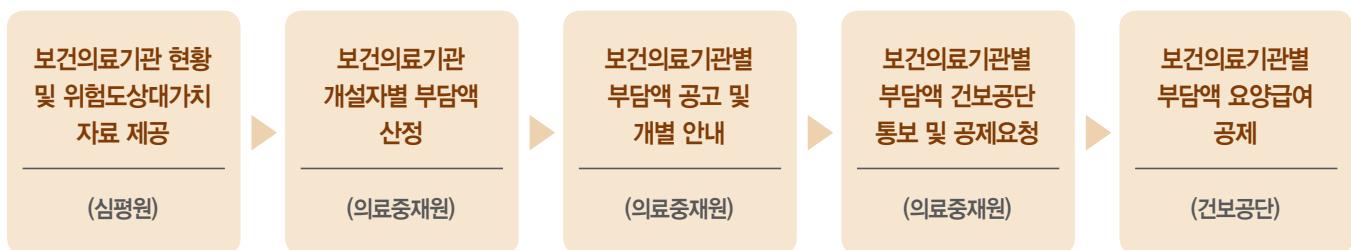
-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
- ※ 상기 일정은 일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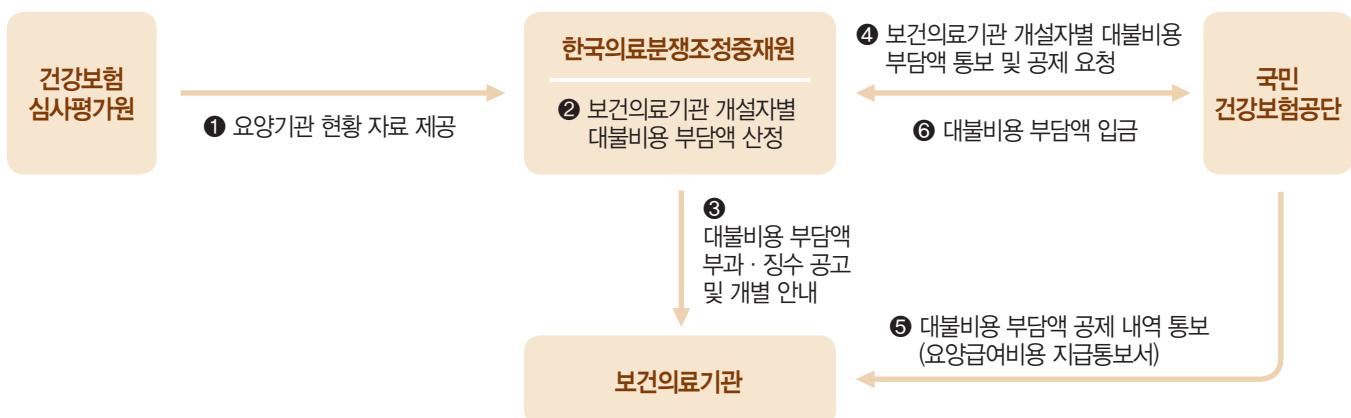
※ 대불비용 부담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

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절차 및 체계

■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절차



■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체계



관련 법령

■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 및 제4항

- 제2항 :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주체
- 제4항 : 대불비용의 납부방법

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~ 제3항

- 제1항 :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
- 제2항 :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징수액 수립
- 제3항 :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공고

재원의 관리 · 운용

■ 의료중재원의 예산과 별도 관리 · 운용

■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· 운용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(☎ 1670-2545) 또는 kmedi@k-medi.or.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